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2015. 6.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는 사망자의 재산조회(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를 통합처리 하는 절차와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속의 권한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100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상속인 중 제1호, 제2호 및 민법 제1003조제3항의 상속인을 말한다.
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이하 “통합처리”라 한다.)라 함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의 조회 신청을 제4조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가 통합 접수하여 직접 조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상속의 권한이 있는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제공 또는 해당 기관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이라 함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조회 신청, 국세 체납액·고지세액 정보조회 신청,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신청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금융정보교환망(FINES)를 말한다.
4.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자동

차관리법」 제77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을 위탁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5.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 제2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2호의 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채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을 말한다.
6. “서울행정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개발된 시·군·구, 읍·면·동의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7. “국토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 2 장 통합처리 등 업무 처리절차

제4조(통합처리 신청 접수처) 통합처리 신청 접수처(이하 “접수처”라고 한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와는 별도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통합처리 신청자격 확인) ① “접수처”는 통합처리 신청 접수 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여, 신청인

이 다음 각 호, 즉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2.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②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신고 등을 완료하고 추후에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부분에 따라 접수·처리하는 때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변경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접수한 다음날 당초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시·구, 읍·면·동의 “접수처”에 업무종료 시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중 금융거래정보, 국세 체납액·고지세액 정보,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신청인 및 사망자 등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접수번호 부여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국세 조회결과가 ‘국세청홈택스’에, 금융거래 조회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됨을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접수 후 자동차 소유정보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리부서 또는 자동차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신청 후 7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하여야 하며 문자서비스·우편·접수처 방문수령으로 구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사전송(FAX전송)은 제외한다.
-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수단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선택하여 조회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접수 후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7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 조회정보를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토지 소유내역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접수 후 토지소유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군·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7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지적부서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상의 별지 제4호 서식(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같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적부서에서는 사망자의 토지소유내역 조회정보를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이송) “접수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후 자동차 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정보 및 토지소유 현황을 각각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해당 조회기관(부서·담당자)으로 이송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란에 서명을 하고 모사전송(FAX전송)을 하거나 1부를 복사하여 그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 3 장 통합처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제12조(이용권한의 부여) ①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은 해당 기관의 “접수처”에게 통합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
 2.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
 3.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무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체납세액·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조회)
- ② “통합처리”를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은 통합처리신청사항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 이용 권한을 해당 기관의 “접수처”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3조(사망신고 이후 정리사항 안내) “접수처”는 사망신고에 따른 추후 정리사항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배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사망자 재산조회에 관한 통합 신청·처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관리대장 기재 및 신청서의 보관)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은 통합 처리 신청 접수 및 취소·변경 접수 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대장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등을 1년간 보관한다.

제16조(수수료) 통합처리신청 처리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단 별개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위해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 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의 취소·변경은 신청 다음 날(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20일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접수처 확인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년 월 일	자동차 번호 <i>*이륜차 제외</i>			

대리인 (대리 신청시 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임의대리인	* 접수처 확인란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도로명 주소					

사망신고 후속조치 조회 내용

구분	조회 선택 (조회를 원하는 항목 []에 V 표시)	조회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전체 *본 항목 "V" 시에는 아래 항목 "V"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 [] 은행 [] 우체국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금융투자회사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한국에탁원 [] 종합금융회사 []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금융협회,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input type="checkbox"/>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
토지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지적부서 방문수령 [] 우편 [] 문자(SMS)
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지방세	[] 세무부서 방문수령 [] 우편 [] 문자(SMS)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소유내역	[] 자동차부서 방문수령 [] 우편 [] 문자(SMS)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각 조회 서비스 항목별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조회는 20일 이내(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지방세·자동차·토지관련 조회는 각각 7일(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이내입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주소가 필요합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통합조회 처리를 위해 각 처리기관에 신청인(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민연금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사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제공하며, 각 처리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처리기관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각 금융협회
- 신청자(상속권자)는 이 건으로 취득한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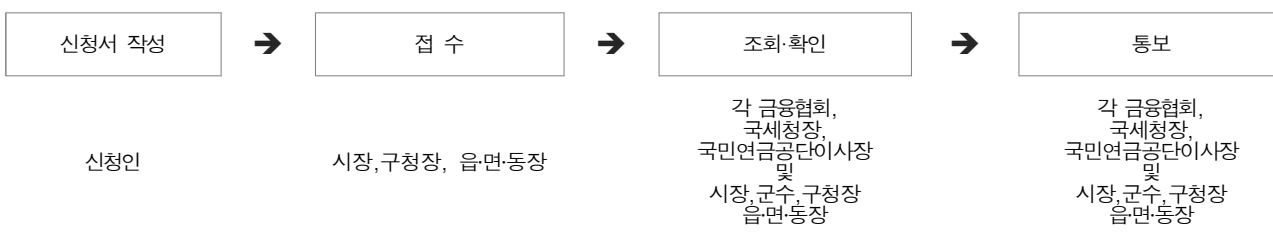
본인은 위 유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세무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지적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자동차담당자 확인 (fax수신 여부 확인)	(서명)
---------------------------	------	---------------------------	------	----------------------------	------

처리절차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 · []변경 신청서

※ 취소·변경 신청은 통합처리신청 자격자에 한하며 당초 신청인이 통합처리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송기한)	즉시(3근무시간)
------	-----	----------------	-----------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접수처 확인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 신청인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과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년	월	일	

대리인 (대리 신청시 에만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도로명 주소				

변경내용 (변경시만 작성)	당 초	변 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없음
-------------	--	-----------

위와 같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취소 ·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 읍·면·동장 귀하

처리절차

